

제 호

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대표자:

3. 주소:

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행정안전부장관 직인